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및 손해배상금 청구 지침

제주체신청예규 제34호 (2002. 7. 23)

1. 【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공무원등의 범위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
 - 가. 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조세납명령관·기금출납명령관·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도급경비취급공무원
 - 나. "가"호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대리자·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 다. "가"호 및 "나"호의 보조자로서 체신청장 및 총괄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라.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재정보증의 설정】 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으로 하고,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공무원등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지출관·조세납명령관·출납공무원·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도급경비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 300만원
 - 나. 우편환·우편대체·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1,000만원
 - 다. 세입징수관·재무관·기금출납명령관·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 200만원
 - 라. 1 항 "다"호의 공무원 : 200만원
4. 【보증보험의 계약】 보증보험의 계약은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보험으로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 가. 신원보증보험 청약서 작성
 - (1) 보험계약자는 체신청장 또는 총괄국(집중국)장으로 한다.
 - (2) 피보험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 (3) 피보증인은 회계공무원 직위로 한다.
 - (4)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나. 구비서류
 - (1) 신원보증보험 청약서 또는 보험계약내용 추가부보 승인신청서 1부
 - (2) 회계관계공무원 직위(직무)표 3부
 - (3) 피보증인직위고지서 3부
 - 다. 계약체결 후 정원이 증가 또는 손해보상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보험료의 지급】 회계공무원등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한다.

6. 【보험증권 보관·관리】 보험증권은 인사부서에서 보관하며, 인사사무처리규칙 제4조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관리한다.

7.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가. 회계관계공무원등에게 변상책임이 있거나 상급기관의 변상명령을 받게된 때 또는 기타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신청 및 총괄국(집중국)은 보증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보험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변상책임 발생국에서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총괄국에 청구하여야 한다.

(가) 상급기관의 임의 서식에 의하여 내린 변상명령서

(나)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당무자의 사유서

(라) 기타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2) 손해배상 청구문서를 접수한 총괄국에서는 지체없이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가) 손해배상금 청구 기본문서

(나) 신원보증보험증권 사본

(다) 소속국에서 발송한 구비서류 첨부

(3)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당해 회계공무원등이 변상하여야 함으로 초과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발생국의 관서장 및 총괄국(집중국)장은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손해의 범위】 신원보증보험 약관의 내용을 참조하되 총괄국은 약관내용을 소속 관서에 배포하여 다음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피보험자 관련사항(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나. 공통사항(기타 약관에 기재된 사항 등)

9. 본 지침에 의거 지도3400-3529(1987.9.2) 제주체신청예규 제10호는 자연 소멸되는 것이니 착오 없도록 할 것.